

崔世珍의 生涯와 年譜

—그의 誌石 발견을 계기로 하여—

安秉禧*

- | | |
|---------------|------------|
| 1. 머리말 | 4. 崔世珍의 年譜 |
| 2. 崔世珍의 誌石 | 5. 맷음말 |
| 3. 生涯와 관련된 문제 | |

1. 머리말

開化期에 국어국문의 정리운동이 일어나면서 世宗이 訓民正音, 곧 한글을 창제할 때에 ‘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쓰도록 규정하였으나, 崔世珍¹⁾이 『訓蒙字會』 앞머리의 「諺文字母」에서 ‘初聲終聲通用八字, 初聲獨用八字’라 하여 자음을 받침으로도 쓸 것과 쓰지 못할 것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국어의 표기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당시 국어국문을 정리하려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사용하여 語彙形態素의 표기를 일정하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崔世珍은 매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1940년 『訓民正音(解例本)』이 출현하여 그 책에 받침으로 사용할 자음은 ‘八字可足用’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初聲終聲通用八字’가 崔世珍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규정을 좀더 명시적으로 하였을 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잘 못’을 말하는 일이 없지 않아서 국어에 대한 소양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崔世珍과 그의 『訓蒙字會』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밖에 崔世珍은 漢語 곧 중국어와 吏文의 학습서를 정비한 업적이 있어서 국어학자를 비롯한 그 방면 전공자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그의 生涯와 學問에 대하여는 方鍾鉉(1948), 李崇寧(1965), 姜信沆(1966b), 李崇寧(1976), 박태권(1976), 金完鎮(1994), 安秉禧(1997), 鄭光(1999), 安秉禧(1999)에서 여러 각도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²⁾

* 필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崔世珍의 이름 끝자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자신은 俗字인 ‘珍’으로만 적었다. 여기서 正字인 ‘珍’으로 적는 것은 순전히 인쇄의 편의 때문이다.

2) 李崇寧(1965)와 李崇寧(1971), 姜信沆(1966a)와 姜信沆(1966b)는 모두 學術誌나 論文集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뒤에 李崇寧(1981)과 姜信沆(1978)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 글에서의 인문은 수록된 책으로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生年이나 家系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서生涯를 명확히 못하였다. 『中宗實錄』 37년(1542) 2월 辛酉(10일) 조의 卒記로 별세한 해는 뚜렷하나生年과 享年은 추측에 머물러 있었다. 일찍이 方鍾鉉 교수가 1503년(연산 9)의 癸亥別試에 함께 2등으로 합격한 金安國의 문집인 『慕齋集』(原刊本 詩集 권3, 15a. 重刊本 권3, 29a)에 있는 〈崔同知世珍挽〉이란 挽詞의 제1련에 나오는 “逆旅浮生七十翁, 親知凋盡寄孤躬”의 ‘七十翁’을 죽은 崔世珍의 나이라고 하여 별세한 1542년에서 역산하여 1473년(성종 4) 전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方鍾鉉 1948:146-7),³⁾ 그 뒤로 그것이 학계의 정설로 되었다(李崇寧 1981:205, 박태권 1976:22). 그러나가 『國朝文科榜目』의 한 異本에 나오는 崔世珍의 기록에 있는 ‘丙午員’ 곧 1486년(성종 17)에 生員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향년이 80세 정도일 것이란 새로운 추정이 제기되었다(李崇寧 1976:89-91). 거기에 위 挽詞의 ‘七十翁’이 故人인 崔世珍에 대한 것일 수 없고 挽詞를 지은 당시 65세인 金安國 자신에 대한 것이란 해석으로 그 추정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安秉禧 1997:134). 그런데 ‘丙午員’은 生員이 아니라 司譯院의 院科 곧 譯科의 합격이란 추측이 제기되고(安秉禧 1977:135, 鄭光 1999:8), 그럴 경우에 생년이 1465년(세조 11)이라 하여 향년이 78세(鄭光 1999:8),⁴⁾ 또는 1467년이라 하여 76세 전후(安秉禧 1999:8-9)로 추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11월 초에 誠庵古書博物館에서 崔世珍의 誌石을 수장하고서 곧 일반에 공개하게 되어 그의 生年이 분명하게 되었다.⁵⁾ 우리는 그 博物館의 誠庵 趙炳舜 회장이 공개하는 자리에 참여시켜 주시고, 또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厚意에 대하여 깊은 謝意를 표하여 마지 않는다. 이에 誌石의 보고에 덧붙여서 崔世珍의生涯를 다시 살펴보고 아울러 그의 年譜을 새로이 만들어 보기로 한다.

2. 崔世珍의 誌石

誌石은 故인의 성명, 가계, 생몰 연대, 행적, 무덤의 위치 등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묻는 板石이나 陶板이다. 崔世珍의 誌石은 7-8년 전 果川의 한 아파트의 기초 공사에서 발견된 것이라 하는데, 모두 2매의 白磁陶板이다. 陶板은 長方形인데, 크기는 A판이 세로 25.4cm

3) 方鍾鉉 선생이 본 『慕齋集』은 중간본인데, 우리는 원간본도 보게 되어 인용된 挽詞의 誤字도 바로잡은 바 있다(安秉禧 1997 참조).

4) 鄭光(1999:8)에서 77세를 산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78세의 잘못이다. 만으로 나이를 계산한 것인지 모르나 생일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테다가, 죽은 날짜가 2월 10일(辛酉)이므로 만으로 따지면 오히려 76세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5) 지난 11월 9일자 朝鮮日報 문화면에 誌石 1장의 사진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가로 18cm(위쪽)~17.2cm(아래쪽)이며, B판이 세로 23.5cm, 가로 17.2cm(위쪽)~17cm(아래쪽)이다. 두께는 두 판이 1.9cm(위쪽)~1.5cm(아래쪽)로 되어 있다. 모양은 평평한 板形이 아니라, 誌文이 있는 앞면의 가운데가 세로로 약간 부풀어 올라서 흡사 기왓장을 뒤집어 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誌文은 앞면에 隱刻으로 새겨져 있는데, 字徑이 2cm 내외로 일정하지 않다. 2판이 모두 無界에 5행 8자로 글자를 배열하였으나 11자의 행도 있다. 夫人的 나이는 雙行인 협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팔호 안에 써보이면 誌文은 다음과 같다.

A판: 嘉善大夫同知中樞

府事兼五衛將崔公

世珍之墓東爲貞夫人

永川李氏之墓夫人

嘉靖辛丑九月葬(夫人年 / 四十七終)

B판: 年至七十五嘉靖壬

寅以疾終同年四月

二十日葬于果川縣

午坐子向之原夫人

先公一年七月二十九日終

誌文은 협주까지 합하여 모두 90자이다. 名人們의 誌文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빈약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誌文에 나타나는 가계와 행적이 빠져 있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종래 추측만 분분하던 崔世珍의 나이가 분명히 기록되고, 전혀 모르던夫人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誌文의 순서대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崔世珍의 마지막 品階는 嘉善大夫로서 同知中樞府事와 五衛將을 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나, 品階가 從二品으로 上階인 嘉靖大夫로 加資를 받지 못한 채 下階인 嘉善大夫로 마친 것을 확인시켜 주며 마지막 관직도 軍職인 五衛將을 겸한 데서 정통적인 文班으로 대접받지 못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夫人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무덤이 崔世珍의 무덤 동쪽에 있다고 하니 合葬이 아니라 동서로 雙墳이었음을 말한다. 부인은 崔世珍의 품계에 따라 貞夫人으로 永川李氏이며, 嘉靖 辛丑 곧 1541년(중종 36) 47세의 나이로 돌아가서 그해 9월에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곧이어 나오는 誌文에 따르면 이듬해 돌아간 최세진의 나이가 75세이므로 부부의 나이는 27세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初娶夫人이 아님이 분명하다. 당시 여자의 婚齡이 15세 정도라면 1509년(중종 4) 전후에 40대 초인 崔世珍과 결혼한

셈이다. 『中宗實錄』에 의하면 1509년 정초에 崔世珍이 成均館直講에 임명되었으나 臺諫의 탄핵으로 결국 체직되고 말았는데, 그때 탄핵의 한 이유로 褒中娶妾이 있다.⁶⁾ 그러므로 褒中이 혹 前妻의 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탈상한 뒤 정식으로 永川李氏를 재취로 맞이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최세진이 75세의 나이로 1542년 질병으로 별세하여 4월 20일 果川縣의 午坐南向 곧 남쪽에서 북으로 향한 언덕에 장사지냈다는 것이다. 『中宗實錄』에서 그해 2월 辛酉 곧 10일에 별세했다고 하므로 장례는 죽은 지 70일만에 있었던 셈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이에 대한 여러 추측이 이 誌文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生日은 모르나 1542년에서 역산하면 1468년(세조 14)에 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崔世珍에 앞선 전년 7월 29일에 작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장례가 A판의 기록에 9월이라 하므로 죽은 지 4,50일만의 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誌文은 극히 간단해서 崔世珍의 貫鄉조차 볼 수 없다. 오늘날 銘旌이라도 ‘崔公’ 앞에 관향 2자가 있는 관례에 비추어서 얼마나 소루한 誌文인지 이해된다. 종래 『國朝文科榜目』에 그의 관향을 ‘槐山’이라 한 기사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槐山崔氏라 하고는 있으나 관향을 공백으로 둔 異本도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雜科榜目』 등에 의하면 稷山崔氏가 譯科, 醫科 등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가문인 데다가 崔世珍과 같은 대단한 譯學의 전통이 그에게서 완전한 단절을 보았다고는 하기 어려우므로 그의 관향이 稷山崔氏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던 것이다(金完鎮 1994:79-80). 그러나 『譯科榜目』에서 譯官의 경우를 보면 稷山崔氏는 합격자로서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8세기 초인 1711년(숙종 37)부터이다.⁷⁾ 그러므로 이 誌石으로 그것이 밝혀지리라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는 무산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誌石에 부인이 永川李氏이므로, 혹 女婿로 崔世珍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그 族譜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⁸⁾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종래와 같이 異本에 따라 『國朝文科榜目』에 표기된 槐山崔氏라고 함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그의 이름 끝자가 이 誌文에서도 俗字인 ‘珍’이라 기록된 문제가 있다. 이 글자는 일찍이 李崇寧 선생이 지적한 바 있다. 즉 實錄 등에서는 정자와 속자가 두루 쓰였으나 『四聲通解』의 서문이나 『訓蒙字會』의 〈引〉에서는 속자가 쓰여진 점으로 崔世珍 자신은 속자

6) 중종 4년 1월 乙未 곧 2일에 行檢이 없는 사람이라 師表가 될 수 없으니 直講을 체직하라 하고, 이를 뒤인 丁酉 곧 4일에 褒中에 침을 얻었다는 일은 그 이웃이 褒前의 일이라 하였으나 끝까지 추궁하여 심문하지 않았으므로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는 탄핵이 있어서 그날로 체직되었다.

7) 우리가 조사한 『譯科榜目』은 奎章閣 소장의 활자본이다. 弘治戊午(1498 연산4) 式年試부터 光緒辛卯(1891 고종28) 式年試까지의 방목이나 실지로 壬辰亂 이전은 결락된 것이 많고 萬曆庚子(1600 선조 33) 式年試부터는 빠뜨리지 않고 등재되어 있다.

8) 우리가 조사한 永川李氏의 족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永川李氏族譜』(大邱/大田, 1927), 『永川李氏族譜』(京畿 高陽, 1927), 『永川李氏世譜』(慶北 軍威, 1928)이다.

로만 썼다고 한 것이다(李崇寧 1981:193, 1976:88). 그러나 다른 학자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우리의 조사로도 붓으로 쓴 것을 새겨서 출판한 木版本에는 이 誌文과 같이 언제나 속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미 주조된 활자로 인쇄된 책, 예컨대 『訓蒙字會』을 해자본의 〈引〉에는 목판본과 달리 정자로 쓰여 있다. 그러므로 崔世珍과 그의 집안에서는 끝자를 속자로만 쓴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이름을 지은 父祖의 뜻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두 글자는 筆劃의 수효도 똑 같으므로 정자를 쓰더라도 무방한데 굳이 속자로만 쓴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이 崔世珍은 韻學뿐 아니라 字學에도 밝아서 『訓蒙字會』, 『韻會玉篇』을 편찬한 사람이다. 그의 『四聲通解』(上, 58b)에서는 『洪武正韻』에 따라 정자인 ‘珍’을 수록한 뒤에, 『洪武正韻』에 없는 속자인 ‘珍’을 권표로 둘러 추가하였다. 『洪武正韻』이 어떤 책인가를 잘 아는 崔世珍이 자신의 이름자에 그 책에 없는 속자를 고집한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明나라에서 공용의 문자에 『洪武正韻』에 수록된 字體를 채택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李崇寧(1981:319-321)은 『洪武正韻』이 韵書가 아니라 字體의 규범이라는 의외의 방향으로 일탈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은 편찬할 때부터 『洪武正韻』은 字學의 표준으로도 삼겠다는 방침이었다. 그 책의 서문에서 宋濂이 ‘當今聖人在上 車同軌而書同文’이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규범적인 韵書로 인식하여 1455년(단종 3) 『洪武正韻譯訓』을 편찬, 간행하였으나, 곧 바로 字學의 典範으로도 삼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즉 『洪武正韻譯訓』이 간행된 이듬해인 1456년(세조 2)에 禮曹에서 講肄官을 선정하여 그 책으로 漢音 곧 중국의 한자음과 字樣을 익히도록 하여 달라고 아뢰어 왕의 윤허를 받은 일이 그것이다.⁹⁾ 3년 뒤에는 중국에서 온 사신에게 우리나라 事大문서의 자체는 예로부터 宋나라 毛晃의 『增修互注禮部韻略』에 따랐는데 『洪武正韻』의 자체로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기까지 한다. 이에 사신은 자획만 바르다면 『洪武正韻』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¹⁰⁾ 그러나 중국 禮部의 태도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듯하여, 1461년(세조 7) 4월에 謝恩使 편에 禮部로 問文을 보내어 『洪武正韻』의 坊刻本으로는 문서에 字樣의 잘못을 저지를 염려가 있으니 올바른 官本을 내려주기를 청하게 된다.¹¹⁾ 그 청은 책판이 南京國子監에 있는 데다 印本이 없다고 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비록 중국의 官本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이듬해 禮曹에서 科試에 종래 사용하던 『禮部韻略』과 함께 『洪武正韻』을 함께 사용하도록 아뢴 것을 보면 『洪武正韻』의 자체에 대한 교육에도 노력을 한 것이 드러난다.¹²⁾ 이러한 사정은 明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

9) 『世祖實錄』2년 4월 戊申조.

10) 同上, 5년 4월 壬戌조.

11) 同上, 7년 4월 丙子조.

12) 同上, 8년 6월 癸酉조.

속되었는데 1635년(인조 13)의 實錄에 우리나라에서의 『洪武正韻』 간행과 관련된 다음 기사가 나타난다.

承文院에서 아뢰기를 “중국에서 반사한 『洪武正韻』은 音義와 字法이 다 갖추었으니 원래 高皇帝가 同文天下를 위하여 창제한 책입니다. 이제 마땅히 이 책을 간행, 인출하여 널리 퍼도록 하여서 寫字官이 익히게 하여 멋대로 봇을 놀려 참을 잃는 폐단을 없게 하소서” 하니 왕이 따랐다.¹³⁾

여기에서 적어도 17세기 30년대까지 『洪武正韻』이 明太祖의 天下同文을 위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사대문서에 자체를 잘못 쓰지 못하도록 승문원 사자관에게 익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正史뿐 아니라 野史에서도 확인된다. 崔世珍의 제자로서 사대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吏文學官 魚叔權이 『稗官雜記』(권1)에서 奏本은 자획을 『洪武正韻』에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이 그 예증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앞으로 보게 될 바와 같이 質正官으로 중국에 자주 드나든 崔世珍이 스스로 이름자를 속자로만 쓴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다음의 實錄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황태자 책봉에 대한 進賀使로서 1492년(성종 23) 4월에 떠나 그해 9월에 돌아온 鄭佸이 왕께 행한 다음 보고인 것이다.

鄭佸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듣기로는 高皇帝의 謚가 元章(원문대로, ‘元璋’의 잘 못)이라 하였는데, 禮部 郎中 李雲은 世珍이라고 말하니 등극 후에 고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講肆官 崔世珍이 휘를 범했으니, 청컨대 正朝使로 질문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¹⁴⁾

예부 郎中은 예부의 尚書, 侍郎에 다음가는 관직으로 4명이 있는데, 儀禮, 祠祭, 主客, 精膳의 四司 중 하나를 책임진 관원이다. 그러한 요직에 있는 관원이 明太祖의 휘가 世珍이라 하였으니 중국에 드나들 일이 적지 않을 崔世珍으로는 明나라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자체 곧 『洪武正韻』에 수록된 정자 ‘珍’을 버리고 속자를 사용하여 일종의 便法인 避諱를 한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避諱는 代字나 闕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朝鮮太祖의 휘인 ‘旦’과 宣祖의 初諱인 ‘鈞’을 뜻이 비슷한 ‘朝’와 ‘斤’으로 읽는 피휘의 방법도 있었다.¹⁵⁾ 그 밖에 피휘할 이름은 ‘某’라고 읽는 관습도 있었다. 낭중 李雲의 말은, 明太祖의 휘가 元璋이고 자가 國瑞로 崔世珍의 이름과 아무 상관이 없으나 자의 公瑞가 비슷

13) 『仁祖實錄』 13년 11월 辛亥조.

14) 『成宗實錄』 23년 9월 甲戌조.

15) 『註解千字文』에서 이를 두 글자에 대하여 ‘太祖御諱 當讀如朝조(23b), 宣祖初諱 當讀如斤근(39b)’이라 한 주석이 그것을 말한다.

한 데서 나온 농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 들은 우리 使行, 그 중에도 崔世珍은 혹시 있을지 모를 犯諱의 힐난을 속자로 씀으로써 면해 보려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 것이다. 지나친 천착이란 기통이 있겠지만, 아무리 父祖의 命名이라 하여도 정자로 쓸 수 있을 터인데 언제나 속자로만 쓴 이유의 하나로 우리의 추측은 충분히 고려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3. 生涯와 관련된 문제

誌石의 발견으로 崔世珍은 生年이 밝혀지고 부인의 성씨와 나이가 밝혀졌으나, 여전히 가계와 생애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의 생애를 좀 더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가계는 아버지가 正灝이란 기록만 알려져 있다. 그가 1503년(연산 9)의 이른바 癸亥別試 文科에 합격하여 『國朝文科榜目』에 이름이 오르고 ‘父正灝’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崔正灝은 전혀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그 무렵 譯官으로 활동한 崔灝이란 사람에 주목하여 方鍾鉉(1948:145-6)에서 ‘正灝’의 ‘正’은 관직인 司譯院正일 가능성을 제기하여 그의 아버지는 譯官으로서 司譯院正을 지낸 崔灝일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이것은 崔世珍의 행적과 학문과도 맥이 닿은 일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金完鎮(1994:81)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추정에 동의하면서 崔灝이 ‘通事司譯院副正’이란 『成宗實錄』(13년 (1482) 11월 甲辰조)의 기사를 제시하고 司譯院副正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수정안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崔世珍의 아버지는 司譯院正이거나 副正인 漢學通事로 외자 이름의 灝이란 추론이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實錄에 따르면 중국과의 외교에 漢語通事 崔灝은 1477년(성종 8) 4월부터 1486년(성종 17) 4월까지 활약하였다. 다시 말하면 司譯院副正으로 기록된 이후에도 4년이나 더 외교무대에서 활약하였다. 1677년(숙종 3)의 『朴通事諺解』 卷下와 1795년(정조 19)의 『重刊老乞大』의 卷末에는 그 책의 간행 관원의 명단 곧 題名이 있는데, 거기에는 ‘前司譯院正’이 여럿 나오고 있다. 이는 通事로서 외교에 기여가 있고 일정한 연조가 차면 司譯院正으로의 승진이 거의 자동적인 관례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司譯院副正인 崔灝도 4년이나 더 활약한 기록으로 미루어 司譯院正으로 승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方鍾鉉 선생의 추론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⁶⁾ 여

16) 金完鎮(1994:81)에서는 司譯院副正이 院副正과 院副로 略記될 수 있으므로 외자 이름이 후속될 때 院副正의 ‘正’이 이름의 첫 자로 오독될 확률이 높은 것도 司譯院副正의 한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雜科榜目』 등에 의하면, 司譯院正과 그 副正은 옛날의 관행에 따라 譯正과 譯副正으로 줄여 적힌다. 그리하여 司譯院正 灝은 ‘譯正灝’이라 기록되게 마련인데 그것은 譯官 正灝로 誤分析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기에서 崔世珍의 父祖, 적어도 아버지가 漢學의 譯官임은 분명하다. 『中宗實錄』의 史評에서 그를 평하여 ‘能通漢語 不失家業’ (12년(1517) 12월 戊申조)이라 한 것과 『四聲通解』의 서문에 그 자신이 ‘自學箕裘 積志不懈’ 라 한 것도 가계가 漢學의 譯官임을 말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 崔世珍 자신도 譯官일까. 다시 말해서 譯科를 거친 사람일까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通文館志(續編)』의 人物조에서 崔世珍을 다음과 같이 譯科 출신으로 기록한 데서 譯官으로 치부되어 왔다.¹⁷⁾

崔世珍 精於華語 兼通吏文 成廟朝中院科 選補講肆習讀官 旣數年 親講所業 大加獎歎 特差質正官 言官啓曰 以雜職而補質正之官 古無此例 上曰 苟得其人 何例之拘 自予作古可也云云
(권7, 3b)

즉 그가 成宗 때에 院科 곧 譯科에 합격하여 講肆習讀官에 선발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의 출전이 『稗官雜記』라고 부기하고 있다. 그러나 출전이라 한 책의 崔世珍조(권2)에는 譯科에 합격하여 講肆習讀官에 선발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姜信沆(1978:89-90)에서는 강이습독관은 年少文臣이나 衣冠子弟로 충원된 사실로써 譯官 출신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漢語와 吏文에 두루 능통한 文臣이라는 것이다.¹⁸⁾

여기에서 『國朝文科榜目』의 한 이본은 崔世珍을 ‘丙午員’이라 기록한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기록은 成宗 丙午 곧 1486년(성종 17)에 19세로 生員에 합격되었다는 것이다. 入學의 문이라는 小科에 합격하였으므로, 당연히 成均館 유생이 되었을 것이며, 거기에서 선발되어 강이습독관이 되었다고 하면 극히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國朝文科榜目』에서도 과거에 합격하기 전의 관직이 강이습독관이라 하여 譯科 합격만 제외하면 『通文館志』의 기록과 부합한다. 그런 뒤에 그는 거의 20년 만인 30대 중반의 나이로 文科에 급제하여 당당한 文臣의 자격을 얻는다. 小科의 同榜은 바로 그해 甲科로 합격한 金駟孫을 비롯하여 崔世珍이 합격할 때까지 과거마다 文科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뒤로도 간헐적으로 합격자를 내다가 1516년(중종 11)의 式年試와 別試에 모두 3인의 합격자를 마지막으로 내게 된다.¹⁹⁾ 그러므로 崔世珍은 정통적인 文臣이 거치는 小科와 大科를 다 합격한 文臣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中宗實錄』에 의하면 崔世珍은 흑독한 臺諫의 탄핵과

17) 이러한 인식은 근래 학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본문에 인용된 다음 기사뿐 아니라 『通文館志』 편찬자가 崔世珍을 故事조가 아닌 人物조에 수록한 점이나 吏曹正郎인 李聃命이 『朴通事諺解』 서문에서 譯官 周仲(顯宗 1년(1660) 庚子式年 譯科 합격)과 꼭같이 다루고 있는 점에서 늦어도 17세기 중엽부터서 그러한 인식과 차우를 보게 된다(安秉禕 1997:140-1).

18) 특히 姜信沆(1978:89)의 각주(17) 참조. 1476년(성종 7)의 『成宗實錄』 5월 丙辰조에도 司譯院提調가 강이습독관 중에는 나이 늙고 재주가 없으며 죽은 사람도 있으니 구례에 따라 四館의 七品 이하인 參外官이나 成均館과 四學의 유생에서 선발하여 채울 것을 아뢰어 왕의 윤허를 받은 기사가 있어서 그 것을 확인한다.

19) 한 이본에는 1519년(중종 14)의 別試에 甲科로 합격한 林百齡도 ‘丙午進’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1496년(연산 2) 생인 億齡의 동생이므로 착오이다.

吏臣의 평가를 받는다.²⁰⁾ 그리하여 安秉禧(1997:135)에서는 ‘丙午員’이란 기록을 『通文館志』에서 말한 院科 곧 譯科의 합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 자신이 譯官 출신의 文臣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文臣에게서 그러한 탄핵과 史評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中宗 이후로는 자신이 譯官이 아니더라도 譯官의 아들이라면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한 집안에서는 文科의 합격자를 낼 수도 없었다. 吏文과 관련된 저명한 예로 1523년(중종 18) 4월에 왕이 成均館에 행차하여 베푼 庭試에서 鄭蕃이 2등으로 합격하여 紅牌까지 받았으나 新良人이라는 신분에 대한 大司諫의 논핵으로 파방이 되고 평생을 吏文學官으로 지낸 일이 있다.²¹⁾ 그러한 상황으로 姜信沆(1978:90-9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崔世珍은 스스로 역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집안이 변변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일단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榜目的 기록대로 19세에 小科에 합격하여 生員이 되었다고 함이 무방하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譯官이 하는 通事를 하지 않았다고는 못한다. 물론 그가 通事로서 使行을 따라 갔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御前通事로서 공로가 있어 紅牌를 되돌려 받은 일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崔世珍은 1503년의 別試 文科에 합격하였으나, 그 別試 시행을 건의한 李世佐가 1504년 처형되자 燕山君은 역직의 건의에는 다른 뜻이 있다 하여 그를 포함하여 壮元인 權福 이하 합격자 전원을 罷榜에 처하였다.²²⁾ 同榜은 王室의 인척이라 하여 10일 뒤부터 홍패를 되돌려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正德帝 등극의 詔勅을 가지고 中國사신이 왔을 때에 세운 御前通事의 공로로 1년 3개월만에 홍패를 되돌려 받은 것이다. 『燕山君日記』에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傳敎하기를 “崔世珍에게 홍패를 돌려주라” 하였다. 世珍은 癸亥年 權福榜에 합격했으나 왕이 李世佐가 건의하여 선발되었다 하여 과했는데, 이에 이르러 天使가 왔을 때 御前에서 통역한 공로가 있어서 되돌려 주었다(12년(1506) 3월 癸卯조).

그런데 주의할 일은 이때 꼭같이 御前通事의 공로로 崔灝도 加資의 포상을 받았다. 이를 앞선 『燕山君日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傳敎하기를 “參議 崔灝에게 加資하라” 하였다. 天使가 왔을 때 御前에서 통역한 공로가 있어서 이 명령이 있었다(12년 3월 辛丑조).

그러므로 그때 御前通사는 崔世珍과 崔灝 두 사람이다. 같은 御前通事지만 역할도 같을

20) 이에 대하여는 李崇寧(1981:196-202)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참고 바란다.

21) 『中宗實錄』 18년 4월 戊辰조 및 『稗官雜記』(권2) 참조.

22) 종래 崔世珍의 파방을 李世佐의 추천으로 과거에 응시한 때문이라 하였으나, 李世佐가 건의하여 시행된 別試이기 때문에 同榜과 함께 당한 일이다(安秉禧:1997:136).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약 30년 뒤에 實錄에 기록되어 있었다. 『中宗實錄』에 의하면 明나라에서 올 사신을 위한 御前通事의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文臣通事로 崔世珍, 그 후보로 尹漸를 삼고 譯官通事로는 李和宗을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31년(1536) 12월 壬午조). 이에 비추어 보면 參議인 崔灝는 文臣通事이고 文臣의 자격을 박탈당한 崔世珍은 譯官通事의 자격으로 御前에서 통역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崔世珍이 비록 譯科에 합격하지는 않았다 하여도 뛰어난 漢語의 실력이 인정되어 譯官通事의 일을 한 것은 이 한 예로써도 분명하다고 생각한다.²³⁾

다음으로 위 『通文館志』의 기록에서 崔世珍이 講肄習讀官으로 뽑힌 지 수년에 親講에서 학업이 뛰어남을 인정받아 成宗이 雜職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言官의 반대를 물리치고 質正官으로서 중국에 보냈다고 한 사실의 진위가 문제된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國朝文科榜目』의 한 이본에도 보인다. 종래 이것은 아예 무시되거나 잘못된 일로 생각되었다.²⁴⁾ 그러나 저 위에서 그의 이름 끝자와 관련하여 인용한 『成宗實錄』(23년 9월 甲戌조)의 기록에서 進賀使 鄭佸이 강이습독관 崔世珍이 明太祖 諱를 범하였다고 한 것은 成宗 때에 質正官으로 간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당시 鄭佸은 判書를 거쳐 知中樞府事로 있는 고관이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雜職인 崔世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 범휘한 예로 文臣도 아닌 사람을 굳이 왕에게 거명할 일도 아닌 것이다. 그를 質正官으로 데려갔다고 할 때 비로소 進賀使의 보고는 이해될 수 있다. 또 禮部郎中이 太祖의 휘를 짐짓 世珍이라 한 것도 그가 중국에 갔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두 번째나 세 번째의 質正官일지 모르나, 강이습독관이 된 수년에 成宗의 칭찬을 받고 質正官이 되었다고 하므로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그가 成宗 때의 질정관을 시작으로 崔世珍은 여러 번 중국에 다녀온다. 홍패를 되돌려 받은 뒤인 中宗 때에는 당당한 質正官으로 實錄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된다. 즉 中宗反正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하여 1506년(중종 1) 9월 反正이 성공한 다음날 보내기로 하여 1507년 2월에 귀국한 辭位使와 承襲使, 1518년 7월에 출국하여 1519년 4월에 귀국한 宗系에 대한 奏請使와 聖節使, 1520년 5월에 출국하여 1521년 1월에 귀국한 世子 책봉의 奏請使의 질정관으로 간 것이다. 당시 使行은 보통 4,5개월에서 길 때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와 같이 수개월의 중국 체류 기간에, 더

23) 崔世珍은 뒤에 말한 바와 같이 質正官으로 使行을 따라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 質正官의 일은 정해진 것이 있지만, 正使와 副使의 通事로도 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中宗이 承文院의 일 때문에 崔世珍과 譯官인 李和宗 두 사람 다 중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하자, 南袞이 奏請使의 일이 중요한데 황제가 南京에 있으니 正使와 副使가 北京과 南京으로 왕래할 것이므로 漢語에 능통하고 중국 사정에 밝은 두 사람을 다 보내야 한다고 아뢰어 결국 그대로 가게 된 것으로 알게 된다(『中宗實錄』 15년(1520) 3월 丙午조 참조).

24) 대부분의 논저에서 언급하지 않고 무시하였으나, 姜信沆(1987:92-93, 특히 각주 25)에서는 成宗 때에 質正官으로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지로 이 기록의 출전이라 한 『稗官雜記』에도 그 것은 없다. 중국에 여러 번 質正官으로 다녀온 것으로 해석되는 구절만 있다.

육 漢語와 중국의 文物制度에 대한 의문을 질정하여 오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의 漢語 실력은 출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문제는 최근에 제기된 文科 합격에 관한 일이다. 金完鎮(1994:85-86)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鄭光(1999:9)에서 1503년 별시에 漢吏科를 함께 치르게 하였는데 崔世珍이 거기 합격하여 文科 합격자와 同榜의 영광을 얻었다고 한 것이다. 이 근거는 『通文館志(속편)』의 科舉조 협주에서 “中廟朝崔世珍 卽漢吏科出身也(권2, 2a)”라 한 기사이다. 이 기사는 출전이 『稗官雜記』라고 한 협주의 중간에 있다. 그러나 『稗官雜記』(권2)를 보면 이 구절만 없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다. 그것을 기사의 내용과 漢吏科에 관한 관계史料와 검토하여 보면 내용에 모순이 있어서 崔世珍이 漱吏科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그 기사와史料에 의하면 漱吏科는 朝鮮 초의 『經濟六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經國大典』이 편찬될 때 그것이 빠졌다고 한다. 아는 바와 같이 『經國大典』은 세조 때에 편찬이 끝났으나 신종을 기하여 1471년(성종 2)에 시행되었는데, 개수를 거쳐 1485년 1월 1일부터 확정되어 시행한 法典이다. 그러므로 1503년에는 漱吏科가 없어진 지 20년이 가까운데, 그해 崔世珍이 漱吏科에 합격한다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를 위하여 특별히 漱吏科를 한 차례 부활시켰다면 그야말로 ‘爲人設官’이 아닌 ‘爲人設科’인데 그에 대한 혹독하기까지 한 탄핵이나 史評에 이른바 ‘廢朝’의 잘못된 처사로 등과한 사람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 그 기사와 實錄에서는 1540년(중종 35)에 漱吏科의 부활이 논의되어 이듬해에는 확정되고, 1542년 가을에 初試까지 치렀으나 『大典後續錄』을 편찬하면서 그 조목이 빠지게 되어 會試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崔世珍이 이미 별세한 뒤이다. 요컨대 『大典後續錄』에 조목이 빠져 初試까지 친 漱吏科가 없어지고 말았는데, 祖宗成憲인 『經國大典』에서 없앤 漱吏科를 함부로 부활하여 崔世珍이 합격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通文館志』의 문제의 기사는 편찬자가 崔世珍이 1522년과 1539년에 吏文으로 庭試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는 『稗官雜記』의 기록을 漱吏科의 것으로 오해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²⁵⁾ 따라서 崔世珍은 『國朝文科榜目』에 이름이 오른 그대로 1503년 別試 文科에 합격한 것에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²⁶⁾

끝으로 崔世珍의 性稟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實錄에 의하면 그에 대한 대간 곧 司憲府와 司諫院의 탄핵과 史評이 매우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 즉 탄핵

25) 『稗官雜記』에서는 전자를 ‘嘉靖丙戌’이라 하여 1521년의 일로 하였으나, 『中宗實錄』 22년 3월 丁亥조에 따라 1522년으로 바로잡는다. 그 책의 年記는 반드시 정확하지 않다. 1539년 7월에 편찬된 『吏文輯覽』 등을 1541년에 되었다고 한 것(권2)이 그 저명한 예다.

26) 1540년의 『中宗實錄』(35년 11월 乙卯조)에 의하면 영의정 尹殷輔 등이 『經濟六典』을 보고 漱吏科에 대하여 왕에게 아뢴 바로는 禮曹에서 唱榜하는 雜科와 달리 漱吏科는 文武科 唱榜 때에 뒤이어 함으로써 雜科와 다르게 하여 漱吏學을 힘쓰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文科와 동렬에 놓거나 더욱이 합친다는 말이 없다. 따라서 漱吏科에 합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文科榜目에 이름이 오를 수는 없는 일이다.

에서는 行檢이 없어서 品行이 방정하지 않고 墓中에 妻을 둔 혐의가 있으며(『中宗實錄』 4년 (1509) 1월 乙未(2일), 丁酉(4일)조), 중국 갈 때 남의 재물을 많이 갖고 가다가 法官의 탄핵을 받은 경력에다가 경솔하고 미천하며(同 12년 12월 丁未(6일), 戊申(7일)조), 奸細하기 짹이 없는 小人이라 매도한다(同 13년 4월 戊子(20일)조). 史評에서는 본래 탐욕하고 비루한 성품으로 講肄院教授의 직책을 악용하여 通事와 講肄院習讀官의 선발과 考課를 몇대로 하고 뇌물을 받고 중국에 보내기도 하므로 날로 부유하게 되어 비루하다는 공론을 받았다는 것이다(同 12년 12월 戊申조). 이를 보면 그의 성품은 방정하지 않으며 비루하고 탐욕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들 탄핵과 史評은 모두 40대와 50대 중반의 것이다. 宦路에서 승직과 顯職 임명의 가능성성이 있을 연배에 국한된 일이다. 그 연배가 지나서는 寺監 곧 六寺七監의 正이 되어도 위와 같은 탄핵과 史評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혹독한 평가는 정통 관료들이 그에 대하여 견제할 필요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악평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朝講에서 爰炯이 그의 人品이 나쁘다 하여 관아의 장관에 맞지 않다고 논박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經筵의 領事 南袞이 使行에서 보니 吏文과 漢語를 잘할 뿐 아니라 인품과 문학도 천박하지 않다고 崔世珍을 변호한 일이 있다(『中宗實錄』 15년 4월 乙亥(18일)조.) 魚叔權도 『稗官雜記』(권2)에서 자기는 吏文學官의 다른 동료보다 나이도 적고 학식도 얇았으나 잘못이 있어도 관대하게 보아주고 늘 권면하여 마지않았으므로 吏文으로 꾸중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50대 중반까지 심한 혹평을 하던 史臣도 그가 별세하였을 때는 미천한 가문에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서 이룩한 학식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일이다(『中宗實錄』 37년 2월 辛酉(10일)조). 高官大爵의 卒記에서도 성품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史評을 간혹 보게 되므로 이 때의 史評이야말로 정당한 평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약간의 결점이 없는지 않겠지만, 그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4. 崔世珍의 年譜

지금까지 우리는 崔世珍의 誌石을 소개하고 생애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여 되도록 그의 정확한 생애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으나 기왕의 논저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위의 소개와 논의를 참고하여 年譜를 작성하려고 한다. 특히 年譜는 이미 李崇寧(1981:204-209)에서 처음이지만 자세히 작성되어 크게 참고가 된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연도에 한두 곳의 착오가 있고, 또 누락된 경력도 있는 점이다. 實錄과 관계 자료로써 그것을 보완하기로 하는데, 그의 경력과 행적이 자세히 전하지 않으므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와 관계되는 일은 年譜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또 年記에 誌文과 實錄으로 날짜가 분명한 것은 날짜까지 표시하나, 달만 밝혀진 것은 달, 달도 분명하지 않은 것은 연도만 표시한다.

1세(1468) : 세조14. 出生. 槐山人. 아버지는 司譯院正 濟인 듯(『國朝文科榜目』은 아버지가 '正濟'로 기록됨).

19세(1486) : 성종 17. 生員으로 小科 합격. 講肄習讀官으로 선발되어 漢語와 吏文을 학습.

25세(1492) : 성종 23. 4. 22. 成宗의 인정을 받아 雜職인 講肄習讀官으로서 質正官이 되어 進賀使를 따라 출국.

同 9. 6. 귀국함. 明나라 禮部郎中이 明太祖의 謹가 世珍이라 하여 犯諱의 말을 들음.

36세(1503) : 연산 9. 5. 8. 司譯院 提調의 천거로 서울에 머무르는 中國使行에게 宋平, 宋昌과 함께 漢語를 학습.

同 8. 28. 別試에 文科 2등으로 金安國과 함께 합격(金安國은 일생의 伴侶로, 또는 그의 後見人으로 됨).

37세(1504) : 연산 10. 8. 4. 正六品인 承文院 校檢으로 왕명에 따라 〈雨後賞湖〉란 律詩를 지어 바침.

同 12. 1. 甲子土禍에서 왕명으로 자결한 李世佐가 건의하여 시행한 文科에 합격하였다 하여 同榜과 함께 모두 罷榜에 처함.

39세(1506) : 연산 12. 1. 14. 파방의 원망에서 익명서를 던진 듯하다는 왕의 말에 承旨 등 이 익명서는 파방 전이라 아뢰어 국문을 면함.

同. 3. 13. 御前通事의 공로로 홍패를 돌려 받고 문신의 자격을 되찾음.

中宗 1. 9. 中宗反正 직후 辭位使와 承襲使를 따라 質正官으로 중국으로 떠남.

40세(1507) : 중종 2. 2. 15. 귀국함.

同. 8. 1. 대간이 崔世珍의 일은 司憲府에서 推考하여 아뢴다고 함(협의 내용은 미상. 혹 4년 1월 4일의 대간 탄핵의 내용인 듯).

42세(1509) : 중종 4. 1. 2. 대간이 品行이 方正하지 않다 하여 成均館 直講을 체직하도록 아뢴(그러므로 임명은 전해 연말의 都目政事 때로 추정됨).²⁷⁾

同. 1. 4. 대간이 다시 壽中娶妾의 일, 집안의 낮음과 중국 갈 때 남의 재물을 가져 가다가 탄핵 당한 일로 체직을 아뢰어 윤허를 받음. 直講 해임.

48세(1515) : 중종 10. 11. 14. 영의정 柳淳이 의논드려 아뢰는 속에 吏文과 漢語를 아는 文臣은 崔世珍뿐이라 하면서 承文院에서 出仕하여 가르치는 관직을 겸해서 習讀의

27) 『中宗實錄』 4년 1월 乙未(2일) 조에는 '崔世陳'이라 되었으나, 崔世珍의 잘못이다.

일에 종사한다 함.

50세(1517) : 중종 12. 11. 『四聲通解』 편찬. 서문에 그의 品階가 正三品 堂下官인 通訓大夫로 內贍寺 副正, 承文院 參校, 漢學教授로 되어 있음(그 책 부록에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있어서 『老乞大』와 『朴通事』의 연해서와 그 주석서인 『老朴集覽』이 그 무렵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同. 12. 6. 대간이 內贍寺正으로는 물망이 없는 사람이라 체직할 것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음.

同. 12. 7. 대간이 경솔하고 미천해서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 이 날 實錄의 史評에 講肆院教授를 겸하면서 通事와 習讀官의 선발과 평가를 마음대로 하고 뇌물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다고 폄론함.

同. 12. 19. 대간이 재론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

同. 윤12. 6. 대간이 다시 아뢰어 한 달만에 內贍寺正에서 체직됨.

51세(1518) : 중종 13. 4. 13. 대간이 간사한 小人이라 하여 禮賓寺 副正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事大的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여 윤허하지 않음(副正은 從三品의 관직이므로 通訓大夫인 그에게는 行職임).

同. 7. 奏請使와 聖節使의 質正官으로 출국함.

52세(1519) : 중종 14. 4. 17. 중국에서 귀국함.

53세(1520) : 중종 15. 3. 18. 왕이 承文院의 일이 중요한데 李和宗과 崔世珍을 함께 중국에 보내는 것이 불가할 것이라 하였으나 南袞이 중국 사정을 들어 보내야 한다 함(앞 주 23) 참조).

同. 3. 20. 特進官 姜徵이 崔世珍 혼자 漢語를 이습시키는데 중국으로 가게 되면 질문할 테가 없다고 아름.

同. 4. 18. 朝講에서 한 관아의 정이 못된다는 아름이 있었으나 副正 중 차례에 맞는 사람이 달리 없고, 또 벼릴 수 없을 사람일 뿐 아니라 三品이 된 지 오래다 하여 윤허하지 않음. 南袞이 奏請使로 갔을 때 보니 지식이 많을 뿐 아니라 物論도 있으니 스스로 징계하여 정이 될 만하다 변호함(어느 관아의 정인지는 未詳).

同. 4. 18-24. 대간이 계속하여 체직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음.

同. 5. 奏請使 質正官으로 출국.

54세(1521) : 중종 16. 1. 24. 중국에서 귀국함.

同. 1. 26. 왕이 질의하여 오라 한 雙童髻와 講榻에 대하여 보고하고, 雙童髻와 관련하여 사 온 逍遙巾과 함께 『聖學心法』 4부를 바침.

同. 2. 6. 司憲府가 중국에서 처녀를 뽑아 간다는 私信을 南袞에게 보내어 나라를 소란하게 하였으므로 다시 추고하여 죄 주어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음.

- 同. 2.7. 이와 관련하여 南袞이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 한편 政院에서 의논드리기를
崔世珍의 죄는 常事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아뢰어 義禁府에서 다시 照律하게 함. 司憲府의 아뢰은 윤허하지 않음.
- 同. 2.8. 司憲府가 崔世珍의 일을 아뢰니 推案을 들이면 照律하여 판결하겠다 함(이때 軍職으로 좌천된 듯함).
- 同. 4.24. 司憲府가 아뢰기를 西班으로 보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教用함이 불가하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어떤 文班의 관직인지는 미상. 다음 7월 6일자 기록으로는 承文院 參校인 듯함)
- 同. 4.25, 5.1, 5.8. 司憲府에서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음.
- 同. 5.19. 명나라 使臣이 와서 御前文臣通事의 일을 봄.
- 同. 7.6. 承文院 參校로서 중국에 간 使臣이 보내온 咨文과 詔書의 吏文을 御前에서 모두 읽고 해석함.
- 同. 7.16. 王이 요동에서 보내온 禮部咨文의 吏文을 崔世珍으로 보게 함.
- 同. 7.17. 御前에서 그 咨文을 읽고 해석함.
- 57세(1524) : 중종 19. 2.28. 世子嘉禮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하여 禮曹가 아뢴 대로 『世子親迎儀註』와 『冊嬪儀註』를 한글로 번역하여 전자는 두 별을 만들어 대궐과 세자빈의 집, 후자는 한 별을 만들어 세자빈의 집에 보내게 함.
- 同. 8.16. 王이 중요한 吏文과 漢語에 능통한 文臣은 崔世珍, 趙翊 뿐이라 탄식함.
- 58세(1525) : 중종 20. 봄에 치러진 雜科의 榜目에 의하면 漢學教授를 겸하면서 司宰監正으로 譯科의 試官이 됨.
- 同. 6.4. 承文院 提調가 王명에 따라 崔世珍, 趙翊과 같은 吏文과 漢語에 능통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文臣을 抄啓함.
- 60세(1527) : 중종 22. 3.10. 吏文 殿試에 崔世珍 등 5명 합격함. 『稗官雜記』(권2)에서는 이때 1등으로 합격하여 堂上官이 되었다 함(단, 그 책은 59세 때의 일로 잘못 기술함. 앞의 주 25) 참조).
- 同. 4. 『訓蒙字會』 편찬. <引>에서 그의 品階가 武班이나 正三品 堂上官인 折衝將軍으로 行忠義衛副護軍임.
- 同. 10.15. 疊鼓에서 崔世珍이 文臣의 자리인 동쪽에 섰다가 尹仁鏡이 아뢰어 武臣의 자리인 서쪽으로 서게 됨. 관직은 兼司僕將임.
- 61세(1528) : 중종 23. 1.20. 영의정 등이 아뢰어 漢語와 吏文에 능통한 文臣은 崔世珍뿐이므로 죄를 지어 散官이 된 尹漸도 吏文을 아니 軍職을 주어 承文院에서 常仕하게 함.
- 同. 6.18. 政府와 禮曹 堂上官이 의논하여 아뢰어 湯站에서 온 差批文의 회답을 마련하도

록 함. 이튿날 회답이 작성됨.

63세(1530) : 중종 25. 12. 20. 僉知中樞府事로서 중국에서 구한 필사본 『皇極經世集覽』을 진상하고 弘文館 관원이 교정하여 간행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음.

65세(1532) : 중종 27. 9. 12. 五衛將으로서 『女訓』을 번역하여 진상하니 校書館에서 간행 하라는 전교가 있음.

69세(1536) : 중종 31. 12. 1. 영의정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文臣通事는 이미 탈상한 崔世珍, 후보는 尹漸, 譯官通事는 李和宗을 시킴이 좋겠다 하여 윤허를 받음. 그에 앞서 왕이 그는 襪中이고 늙어서 진퇴가 끊임없이 못하리라는 염려를 함(이보다 앞서 襪을 입었음이 드러남).

同. 12. 12. 좌의정으로 司譯院 提調인 金安老가 崔世珍은 병이 들고 귀도 어두워서 후보인 尹漸로 御前(文臣)通事로 삼아야 하는데 譯語와 글에 대한 것을 모르니 副使通事 李應星을 상경하게 하여 尹漸와 함께 御前(譯官)通事로 하도록 아뢰어 윤허를 받음 (그의 건강이 매우 나쁨을 알 수 있음).

70세(1537) : 중종 32. 1. 17. 영의정 등이 아뢰기를 尹漸가 이미 죄를 지었으니 귀가 어둡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컷병이 나아질 듯한 崔世珍으로 御前通事로 하고 譯官인 朱良佑, 李應星으로 뒤에서 돋게 하도록 하여 윤허를 받음(3월 10일 明나라 使臣이 입경할 때까지 다른 논의가 없으므로 御前文臣通事의 직임을 한 것으로 보임).

同. 12. 15. 上護軍으로서 『韻會玉篇』과 『小學便蒙』을 편찬하여 진상하자 술과 鞍具馬 한 필을 내리고 僉知中樞府事로 제수하게 함(7년 전인 1530년에도 僉知中樞府事로 기록되었으니 잘못이 아니라면 그 사이 체직이 된 듯함).

72세(1539) : 중종 34. 5. 17. 副護軍으로서 우리 나라에 없는 2권의 『大儒大奏議』와 12권의 『皇極經世說』을 진상하면서 간행하기를 청하니 政院에 전교하여 堂上이 된 지 오래니 품계를 올리고 술도 내리라 함. 司諫院에서 아뢰기를 承文院 提調로서 承文院과 관련된 책의 진상은 그의 직분이라 하여 加資를 거두게 하여 熟馬 한 필을 하사함. 政院의 傳教에서 『孝經』의 언해서가 『四聲通解』 등과 함께 이미 편찬되어 진상되었다 함(副護軍은 從四品의 軍職이므로 좌천된 것으로 보임).

同. 7. 24. 承文院 副提調인 五衛將으로서 使臣 보내는 承文院의 의논에 참여하여 왕에게 결과를 아뢰(이로 보아 위의 提調는 正三品 堂上官으로 임명하는 副提調라 할 것임).

同. 7. 『吏文』 등 吏文에 관한 여러 책의 주석서인 『吏文輯覽』, 『吏文續集輯覽』, 『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 『擇稿輯覽』을 편찬하고, 『吏文』의 속편인 『吏文續集』을 편찬함. 〈凡例〉에 나오는 품계는 折衝將軍 行義興衛副護軍임.

同. 8. 7. 吏文 庭試에 護軍으로서 수석으로 합격하여 특별히 加資가 있었음(『稗官雜記』에는

구체적으로 從二品인 嘉善大夫가 되었다 함. 이때 從二品으로 승진한 것임).

73세(1540) : 중종 35. 10. 13. 왕이 『聞見贊錄』을 政院에 내리면서 傳教하기를 崔世珍이 病中이라 입궐하지 못하니 吏文學官으로 질정하게 하고 아뢰라 함(이때 臥病 중임을 알 수 있음).

74세(1541) : 중종 36. 6. 17. 同知中樞府事로서 『京城圖志』, 『女孝經』 각 1책과 妍동의 地圖 1축을 진상하니 熟馬 한 필과 술을 하사하고 謝恩을 못하게 함(謝恩의 의식을 못하게 한 것으로 건강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알게 함).

同. 7. 29. 부인인 貞夫人 永川李氏 별세함.

同. 9. 부인의 장사를 치름.

75세(1542) : 중종 37. 2. 10.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별세함. 實錄의 史評은 다음과 같음. “崔世珍은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으며 더욱이 漢語에 정통하였다. 이미 登第하여서는 모든 事大에 관한 吏文을 그가 맡아보았고, 추천 받아 발탁되어 벼슬이 二品에 이르렀다. 저서인 『諺解孝經』, 『訓蒙字會』, 『吏文輯覽』이 세상에 폐졌다.”

同. 4. 20. 果川의 부인 무덤 서쪽에 雙墳으로 장사를 치름.

5. 맷음말

지금까지 행한 설명과 논의, 그리고 年譜로써 우리는 崔世珍의 생애가 좀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천한 譯官의 집안에 태어나 어릴 적부터 스스로 말한 家業인 漢語를 공부하고 吏文을 익히어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에 여러 번 드나들어서 중국의 文物制度와 物名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실력과 온축으로 通事로서, 또 外交文書, 특히 실무와 관련된 吏文文書의 작성과 해독으로써 중국과의 外交에 이바지하였다. 中年的 나이로 文科에 합격하여 文臣의 반열에는 올랐으나 司譯院에서 漢語教育에 종사하거나 寺監에 근무하였고 顯職으로 일컫는 弘文館, 成均館, 校書館, 承文院의 四館 중 吏文의 실력으로 오직 承文院에만 근무할 수 있었다. 조그마한 잘못으로도 軍職으로 좌천되기 일쑤였다. 誌石에 마지막 품계가 72세에야 겨우 승진한 嘉善大夫이고 관직이 同知中樞府事로서 軍職인 五衛將을 겸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그러한 어려운 宦路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는 많은 훌륭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것은 年譜에서 확인되지만 정리하여 두기로 한다. 그의 업적은 漢語, 吏文과 국어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업적인 漢語에 관한 것은 한글로 注音한 韻書인 『四聲通解』를 편찬하고 司譯院의 漢語 교재인 『老乞大』와 『朴通事』를 번역하고 그 책의 어려운

語句를 주석한 『老朴集覽』을 편찬한 일이다. 그밖에 중국 漢字의 正俗音을 한글로 注音한 『翻譯老乞大朴通事』가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四聲通解』의 부록인 그 凡例에 의하면 俗音이 두어 가지 있으면 다 注音하였다고 하나, 오늘날 전하는 언해서의 注音에는 그것이 없다. 당시 翻譯은 音譯도 가리키므로 언해서에 앞서 『老乞大』와 『朴通事』에 正俗音을 한글로 音譯하여 注音한 책이 간행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따로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둘째 吏文에 관한 것으로는 吏文인 『吏文』, 『少保于公奏議』 등에서 어려운 어구를 주석한 『吏文輯覽』, 『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 『擇稿輯覽』을 편찬하는 한편 『吏文』의 속편으로 『吏文續集』과 그 주석서인 『吏文續集輯覽』을 편찬하여 承文院의 吏文 교재를 완비한 일이다. 셋째 국어에 관한 것은 위의 漢語와 吏文에 관한 업적에 보이는 국어사자료를 들 수 있고, 『四聲通解』의 〈凡例〉와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 나타나는 漢語와 국어 韻韻에 대한 對照言語學 연구도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은 『訓蒙字會』의 편찬이 대표적 업적이다. 漢字 입문서로 편찬되었으나 풍부한 語彙史 자료가 나타나며 凡例 뒤의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는 당시 통행되던 규정을 수록하면서 주석 등에서 독창적인 설명과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한글의 보급에 대한 기여도는 의심스러우나 매우 체계적인 점으로 國語學史의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방면 이외에 별도의 업적으로 『古今韻會舉要』를 部首로 이용할 수 있게 한 『韻會玉篇』이 전하고, 전하지는 않으나 教訓書로 『小學』을 줄인 『小學便蒙』과 『女訓』과 『孝經』 두 책의 언해서를 편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의 업적은 여러 방면으로 적지 않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소루하지 않고 치밀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四聲通解』, 『老朴集覽』, 그리고 『吏文輯覽』 등 주요한 저술에는 하나같이 卷頭에 〈凡例〉를 얹어서 저술의 원칙과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뿐 아니라 『四聲通解』의 〈凡例〉와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는 저술의 이해에 필요한 학술적 정보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주석에서는 典據를 분명히 하여 해설하고, 모르는 것은 ‘未詳’이라 한 곳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老朴集覽』과 『吏文輯覽』 등의 〈凡例〉에서 모르는 어구는 비워두어 뒷날 중국에 질정하여 보완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실지로 그 책들과 언해서에서 ‘未詳’이라 한 것이 꽤 나타난다. 이와 같이 치밀하고 성실한 學究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 결코 평탄한 생애도, 화려한 宦路도 아니었으나 주어진 관직에서 誠力を 다하여 수많은 업적을 남긴 崔世珍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나라에서 올해 10월의 文化人物로 선정하여 여러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 姜信沆(1966a), 〈李朝初期 譯學者에 관한 考察〉, 『震檀學報』 29·30(姜信沆 1978: 56-82 所收).
- _____ (1966b), 〈李朝中期 以後의 譯學者에 대한 考察〉, 『論文集(成均館大)』 11(姜信沆 1978: 83-114 所收).
- _____ (1978),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塔出版社.
- 金完鎮(1994), 〈中人과 言語生活-崔世珍을 중심으로 하여〉, 『震檀學報』 77.
- 박태권(1976), 『국어학사 논고』, 샘문화사.
- 方鍾鉉(1948), 『訓民正普通史』, 一誠堂書店.
- 李崇寧(1965), 〈崔世珍 研究〉, 『亞細亞學報』 1(李崇寧 1981: 191-210 所收).
- _____ (1971), 〈『洪武正韻』의 認識의 時代의 變貌〉, 『金亨奎博士 頌壽紀念 論叢』(李崇寧 1981:314-26 所收).
- _____ (1976), 『革新國語學史』, 博英社.
- _____ (1981), 『世宗大王의 學問과 思想』, 亞細亞文化社.
- 安秉禧(1997), 〈金安國의 崔世珍 挽詞〉, 『東方學志』 95.
- _____ (1999),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韓國語文教育研究會 제131회 學術研究 發表會 要旨), 『語文研究』 104.
- 鄭 光(1999), 〈崔世珍의 生涯와 業績〉, 『새국어생활』 9·3.